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을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으로 한다.

제1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11의5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으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중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1의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2의2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중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2의2 제2호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3 제1호가목5) 표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5) 표 중 13란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목 표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제 9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 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 견근로자인 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 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사현장 명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

작성자 성명 _____

작성자 전화번호 _____ 작성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_____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_____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2017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2017년 1월 1일

제2조(「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운항선박 명세서”를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